

『구미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 : 윤종호 의원

2. 제안이유

- 구미시 건설산업의 경기를 부양하고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신설 및 개정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예산편성과 기본설계 등에서부터 분할발주 적극 검토(안 제5조)
- 표준시장단가 적용제한에 관한 사항(안 제6조)
 - 표준시장단가에 포함되지 않는 공사의 공종이 많음
 - 표준시장단가는 최저가 낙찰제로 형성되며 이는 계속적인 공사비 하락으로 이어져 공사품질 저하를 가져옴
 - 국토교통부 예규(17.2.)에 의거 공사금액 100억 이상 적용

-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 간의 주계약자 공동도급제(안 제7조)
 - 기존 계약 방식은 종합건설업체가 전체 도급 후 전문건설업체와 하도급 계약
 - 「지방계약법」 제29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계약상대자를 2명 이상으로 하는 공동계약 체결이 가능
- 타 지역 건설업체로서 지역업체를 적극 수용한 경우 행정편의와 우대에 관한 사항(안 제8조)
- 입찰참가 자격에 관한 사항(안 제9조)
 - 구미시에 소재한 영세한 소규모 전문건설업체의 발주 참여 용이
 - 「지방계약법」 시행규칙 제25조에 의거 공사·제조 또는 용역 등의 실적의 규모 또는 양에 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목적물의 규모 또는 양의 3분의 1이내에서 실적 및 시공능력을 평가
-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및 문장 정비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건설산업기본법」, 「양성평등기본법」,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,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
-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5. 검토의견

○ 본 구미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

- 건설경기의 침체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분할발주, 주계약자 공동도급제, 표준시장단가 적용제한, 입찰참가자격 완화 등을 통한 지역건설업체의 참여 비율을 극대화하도록 권장하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발의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
- 집행기관 담당부서의 사전 검토 의견을 받은 사항으로 상위법에 위반됨이 없으므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됨.